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도선사업자 등에 대한 음주 등 여부 측정 및
측정 거부 벌칙 규정 신설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89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약물중독의 정의 및 음주 등 여부 측정 수용 의무 신설	3
2. 음주 등 여부 측정 거부 시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 신설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15.
3. 회부연월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물중독 상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음주 또는 약물중독 측정 검사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
조, 제1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Ⅲ. 검토의견

1. 약물중독의 정의 및 음주 등 여부 측정 수용 의무 신설

개정안은 ① 현행법 상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의무 관련하여 ‘약물중독’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② 관계공무원¹⁾에게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이하 “음주 등 여부”라 한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의무) ①·② (생략)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③ ----- ----- ----- ----- ----- -----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1) 현행법 제26조(검사 등)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관계공무원”을 모두 “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④·⑤ (생략)</u>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② (생략)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생략)	상적으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유선이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을 말하며, 도선이란 내수면 또는 일정한 바다목²⁾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도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현행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유·도선사업자에 해당하게 됨³⁾.

2) 바다목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육지나 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을 말한다.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면허·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025년 유·도선사업자 현황]

구 분	합 계	유선	도선	면허	신고
계	263	179	84	198	65
내수면	83	72	11	21	62
해수면	180	107	73	177	3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이러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하 “유·도선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음주, 약물중독 등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선을 조종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운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⁴⁾”와 달리 약물중독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어떤 상태를 약물중독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유·도선사업자 등이 위의 안전운항의무를 위반하여 조종한 경우 사업 면허의 취소,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운항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음주 또는 약물중독 측정 근거는 두고 있지

3.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및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에 따르면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음⁵⁾.

개정안은 현행법이 미비하게 규율하고 있는 약물중독의 정의와 음주 및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조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음주 등 측정을 유·도선사업자 등이 수용하도록 안전운행의무의 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약물중독의 정의와 관련**(안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 문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현황]

「도로교통법」 ⁶⁾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u>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u> 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든 선박에 대한 상시적인 음주 측정이 곤란하여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것이 적발되어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함.

6) 2025. 4. 1.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64호)로서 2026. 4. 2. 시행 예정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개정안은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로교통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은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⁷⁾에 따른 마약류로, 「해상교통안전법」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⁸⁾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 문언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관련 규율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관계공무원의 음주 등 여부 측정 및 유·도선사업자 등의 측정 수용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안 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신설)하여, 관계공무원의 음주 등 측정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⁹⁾.

관계공무원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관청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관할관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전체 263개 유·도선사업체 중 83개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

[현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관청 및 사업체 수]

구 분	관할관청	사업체 수
1.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u>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u>	시·도지사 : 5개 지방해양경찰청장 : 1개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u>시장·군수·구청장</u>	65개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u>해양경찰서장</u>	179개
4. 서울특별시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u>기관의 장</u> ¹⁰⁾	13개

(자료 : 행정안전부)

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음주 등 여부 측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음주 등 여부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선박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곤란하여 주로 여름철, 특정 연휴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¹⁾,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음주측정은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나¹²⁾,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¹³⁾고 판시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음주 등 여부 측정 행위를 유·도선사업자 등의 음주 등 상태에서의 유·도선 조종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행위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관계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특별

1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1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반면, 개정안의 내용을 유·도선의 안전운행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 등 여부 측정 행위로 보는 경우, 별도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필요 없겠으나, 이 경우에도 효과적인 음주 등 여부 측정을 위해 관할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서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한편, 개정안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의 입법례와 같이 구체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음주 등 여부

1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예를 들어, 「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측정과 관련된 규율을 보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약물중독의 정의를 추가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공무원의 음주 등 여부 측정은 해양경찰 또는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16)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음주 등 여부 측정 거부 시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 신설

개정안은 음주 등 여부 측정을 거부한 유·도선사업자에게 ① 면허취소·사업 폐쇄·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안 제9조제1항 제7의3호 신설),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안 제40조 제4의2호 신설)를 각각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 ·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 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 ----- ----- ----- ----- -----. ----- ----- -----.
1. ~ 7의2. (생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설>	7의3.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 <u>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부한</u> <u>경우</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40조(벌칙) -----

현행	개정안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u>제12조제5항제2호</u>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 9.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12조제5항제1호</u>·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부한 자</u> 5. <u>제12조제6항제2호</u>를----- ----- ----- 6. ~ 9.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2조제6항제1호</u>----- ----- ----- ----- ----- ----- 3.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u>제12조제5항제10호</u> , 제15조제2항, <u>제16조제4항</u> ,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1. ----- <u>제12조제6항제10호</u> ----- <u>제16조제5항</u>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첫째, 행정처분 근거 마련과 관련(안 제9조제1항 제7의3호 신설)하여, 음주 등 여부 측정 거부 시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하는 유사 입법례로는 「도로교통법」의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례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u> (단서 생략) 1.~2. (생략) 3. 제44조제2항 후단¹⁷⁾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u>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u>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23. (생략)

1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제재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의 예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벌칙 조항의 신설(안 제40조 제4의2호 신설)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할 것인지, 「해상안전교통법」과 같이 단순히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할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을 규정한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u>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u>(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벌칙)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u>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u>(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u>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u>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의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유사 입법례의 음주 측정 거부 시의 벌칙 조항과 비교 시 제재의 정도는 균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음주 등 여부 측정을 거부하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을 통해 음주 등 여부 측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349